



제417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부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18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총괄적 검토	2
2. 법률별 검토	5
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22.
3. 회부연월일 : 2024.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을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무원 중심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정부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¹⁾

정부는 정부위원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 전문성 보완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현재 다수의 위원회는 고비용, 위원회 간 기능 중복, 저조한 운영실적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입장임²⁾.

이에 정부는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며, 자문단 등 비상설 협의체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 협의체로 대체하는 3대 기준을 마련하였음.

[위원회 정비 기준]

	정비 대상	정비안
폐지	①장기간 미구성 위원회 ②운영실적 저조 위원회 ③공무원들로만 구성 or 민간위원 참여 저조 위원회 ④설치목적 기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 감소 위원회 ⑤단순 자문 성격 위원회 ⑥비상설 구성·운영이 가능한 위원회	폐 지 ※ 필요시 비상설 회의체, 공무원협의체로 운영하거나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통합	⑦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위원회	위원회 간 통합
소속하향	⑧소속 변경을 통한 운영내실화가 가능한 위원회	총리→행정안전부

자료 : 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 2022.7.5.

2) 이명박정부에서 530개였던 정부위원회가 박근혜정부에서는 28개가 늘어 558개로, 문재인정부에서는 79개가 늘어나 총 637개에 달함.

※ 637개는 문재인정부 말('22.5.9) 기준이며, 이후 '22.6.30까지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폐지, 국민통합위원회 신설로 636개임.

이후 각 행정부처가 3대 기준에 따라 만든 자체 정비안³⁾에 「민간
합동진단반」의 진단을 거쳐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를 폐지·
통합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음⁴⁾.

정부는 246개의 정부위원회 폐지·통합에 있어 법률의 개정이 수반
되어야 하는 위원회들의 법률규정 개정을 위해, 21대 국회에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32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⁵⁾.

이 중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5건의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동 5건의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재차 제출함. 국방위원회 소관 개정안으로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 개정안⁶⁾이 제출됨.

□ 해당 위원회들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회의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하여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는

3) 국방부의 경우, 회의 개최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총 9개의
위원회를 선정하였고, 이 중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국방개혁위원회,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지위원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개편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통합」, 2022.9.7.

※ 민간합동진단반은 민간전문가 13명 및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었음.

5) 1건의 개정안은 개별 정부위원회의 설립·운영 근거가 되는 여러 법률을 개정하여 위원회를 폐지
하거나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
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군인복지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하고자 하는 개정안임.

점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전환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정비가 요구되는 6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위원회	위원 수			신설 연도	'21~'23년 회의개최 실적
	공무원	민간	계		운영횟수
국방개혁위원회	13명	-	13명	'07년	1회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8명	5명	13명	'13년	2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현재 미구성			'13년	-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7명	5명	12명	'12년	1회
군인복지위원회	6명	-	6명	'08년	2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6명	6명	12명	'16년	7회

2. 법률별 검토

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국방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u>지속적이고</u>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방부장관 소속하에</u>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국방개혁위원회) <u>국방부장관은</u> <u>지속적이고</u> ----- ----- ----- <u>필요한 경우</u> -----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u>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u>	②----- ----- ----- <u>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국방·안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u>
<신설>	③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

현행	개정안
	<u>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u>

□ 현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개혁위원회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1건('23년)에 불과한 등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국방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보다는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심의완료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에는 고정된 기간 내에 동일한 위원이 계속 참여해야 하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타당성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7.·8. (생략)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도·특별자치도-----. 7.·8. (현행과 같음)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이전부지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 이전후보지 ----- ----- 필요한 경우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공항시설 또는 군사

현행	개정안
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③ (생략) <신설> ④ 선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선정위원회에</u>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선정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u>이전주변지역에</u>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시설 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예비이전후보지를 포함한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4. 종전부지 및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방부장관은 선정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 ----- 필요한 경우 선정위원회에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① 국무총리는 이전주변지역에 ----- ----- 필요한 경우 -----

현행	개정안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군사시설 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군사시설이전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2.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이전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

현행	개정안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 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지원위원회에</u>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u>는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종전부지가 포함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	년으로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원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 -----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에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 -----<u>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종전부지 처리 시 사전협의) ----- -----

현행	개정안
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 ----- ----- -----.

□ 현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의 선정을 위해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를,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 심의를 위해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2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등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특히 동 위원회들은 이전사업 선정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전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음.

이에 개정안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와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보다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심의완료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2항과 제20조제3항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차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고⁷⁾,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수정하고 있고,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수정한 바,

이는 법문 표현의 방식 변경 및 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자구 변경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7) 해당 부처들은 복수차관제를 채택하고 있음

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군보건의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방부에</u>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 필요한 경우 -----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1호와 제2호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장관이

현행	개정안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방부 보건복지관 2. 국군의무사령관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u>지명하는 사람</u> 3.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4. <u>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③ <u>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u> <u><삭 제></u>

□ 현재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는 등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 보다는 군 보건의료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완료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에는 고정된 기간 내에 동일한 위원이 계속 참여해야 하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타당성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군인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u>군인에</u>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방부에</u> 군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군인복지위원회) ① <u>국방부장관은 군인에</u> ----- <u>필요한 경우</u> ----- <u>구성·운영할 수 있다.</u>
③ <u>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	③ <u>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공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군인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u>
<신 설>	⑥ <u>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u>

□ 현재 「군인복지기본법」에서는 군인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지위원회는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2회로서,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성은 낮은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군인복지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 보다는 군인의 복지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심의완료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에는 고정된 기간 내에 동일한 위원이 계속 참여해야 하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책결정의 타당성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다음 ----- ----- 필요한 경우 ----- -----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제1호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현행	개정안
<u>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u>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u>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에 대한 복무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기 보다는 군인의 복무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심의완료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됨.
- 그러나, 앞선 4건의 개별적 상설위원회 존치 검토⁸⁾와 달리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7회 개최하여 개최 횟수가 앞선 논의에서 언급된 위원회에 비해 많으며, 회의 역시 매년 개최하였음('21년 2회, '22년 2회, '23년 3회).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폐기된 개정안(의안번호 제2117702호)에서도,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

8)

구분	위원회	'21~'23년 회의개최 실적 운영횟수
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위원회	1회
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2회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	-
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1회
라.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위원회	2회
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7회

되었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해당 위원회가 단 3회만 개최되어 상설위원회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 한편, 현행법과 개정안 제9조제2항제1호9)는 ‘합참의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정식 표현인 합동참모의장의 줄임말이므로 ‘합동참모의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10

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9조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